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개인정보
공개 금지 및 처벌〉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165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개인정보 공개 금지 및 처벌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 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상담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상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개인정보 공개 금지 및 처벌

개정안은 청소년 대상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및 제43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생략) <신설>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청소년 대상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43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제4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7조 및 제43조제2항제2호1)는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및 사생활 정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보다 안심하고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상담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²⁾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시 개정안 보다 엄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처벌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낮다는 신중검토의 입장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불균형하게 되어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약화가 우려되므로, 안 제43조제2항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